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941 발의연월일: 2024. 9. 11.

발 의 자: 박충권・이종배・김승수

박준태 · 김선교 · 고동진

안상훈 • 신성범 • 유상범

권영진 • 박상웅 • 최수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 후 상당기간 치료를 중단한 사람이 많은 인명을 해친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치료가 중단되면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퇴원등에 관한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통보하도록만 하고, 퇴원 후 지속적인 치료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들의 퇴원 후 치료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 치료를 받게 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제3항에 따른 퇴원등의 사실 통보 사전 고지 및 제4항에 따른 퇴원등의 사실 통보 여부 심사절차"를 "제3항에 따른 퇴원등의 사실 통보 사전 고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5장에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지속치료필요대상자 치료)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 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해를 끼치는 행동으로 입원등을 한 사람이 퇴원등을 할 때 정신건강의학 과전문의가 퇴원등 후 치료가 중단되면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하는 사람(이하 "지속치료필요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54조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퇴원등의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지속치료필요대상 자에 대하여 치료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간 이상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 지속치료필요대상자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 연계하는 등 치료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신건강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지속치료필요대상 자의 재활과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속치료필요대상자 또는 보호의무자와 상담하여 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심사절차 및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한다.

제53조제3항제1호의2 중 "제52조제4항"을 "제52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80조제1항 중 "제44조 및 제50조"를 "제44조, 제50조 및 제52조의2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52조(퇴원등의 사실의 통보) ① 제52조(퇴원등의 사실의 통보)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신의 <삭 제> 료기관등의 장은 정신병적 증 상으로 인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치는 행동으로 입원등을 한 사람이 퇴원등을 할 때 정신건 강의학과전문의가 퇴원등 후 치료가 중단되면 증상이 급격 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 하는 경우에는 그 퇴원등의 사 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본 <삭 제> 인 또는 보호의무자가 제3항에 따라 고지받은 퇴원등의 사실 통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제2 항에 따른 통보를 할 수 없다. 다만, 제54조제2항에 따른 정신 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퇴 원등의 사실 통보, 제3항에 따 른 퇴원등의 사실 통보 사전 고지 및 제4항에 따른 퇴원등 의 사실 통보 여부 심사절차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⑥ 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퇴원등의 사실을 통보받 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해당 퇴원등을 할 사람 또는 보호의무자와 상담하여 그 사 람의 재활과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 설>

5	<u>제1항</u>			
			제3항	에 따
<u>른</u>	퇴원등의	사실	통보	사전
고기	<u> </u>			
6	제1항			

제52조의2(지속치료필요대상자 치료)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 은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 나 신체에 해를 끼치는 행동으 로 입원등을 한 사람이 퇴원등 을 할 때 정신건강의학과전문 의가 퇴원등 후 치료가 중단되 면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 가 있다고 진단하는 사람(이하 "지속치료필요대상자"라 한다) 에 대하여는 제54조제2항에 따

른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 를 거쳐 그 퇴원등의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지속치료필요대상자에 대하여 치료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상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지속치료필요대상자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 연계하는 등치료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신건강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있다. 이 경우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지속치료필 요대상자의 재활과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제53조(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설 기 치·운영) ①·② (생 략)

- ③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 는 심사한다.
- 1. (생략)
- 1의2. <u>제52조제4항</u> 및 제66조제 8항에 따른 퇴원등의 사실 통 보 여부 심사
- 2. ~ 5. (생략)
- ④ ~ ⑧ (생 략)
- 제80조(비용의 부담) ① 국가 또 전 는 지방자치단체는 <u>제44조 및</u> <u>제50조</u>에 따른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② (생 략)

은 지속치료필요대상자 또는
보호의무자와 상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심사절차 및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3조(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설
치・운영) ①・② (현행과 같
<u>♥</u>)
③
1. (현행과 같음)
1의2. <u>제52조의2제1항</u>
2. ~ 5. (현행과 같음)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80조(비용의 부담) ①
제44조, 제50조
또는 제52조의2제2항

② (현행과 같음)